

11. 住宅建設工事監理費支給基準 改正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27호 1997. 7. 16

주요 내용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리대가 등) ① 감리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운영하는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한 경쟁입찰 등으로 별도의 감리대가 결정될 경우 그 금액을 감리대가로 한다.

$$\text{감리대가} = \text{총공사비} \times 0.025$$

②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감리인·월수의 산정은 다음표에 의한다.

③ 감리자는 감리원별 현장 상주기간

에 감리원등급별 환산비를 곱하여 산출한 인·월수의 합계가 제2항의 총공사비에 의한 감리인·월수이상인 경우라도 하여야 하며, 감리원등급별 환산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공표하는 감리부문의 감리원등급별 임금중 중급감리원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하되 보조감리원의 등급 및 임금은 건설 및 기타부문의 중급기능사에 준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명, 주택

총공사비(원)	20억이하	30억	50억	100억	200억
감리인·월	10.03	14.50	23.73	46.21	89.59
총공사비(원)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이상
감리인·월	133.32	217.76	428.43	844.44	1,247.24

※총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리인·월은 직선보간으로 정한다.

단지의 면적,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

2. 감리조직, 감리원의 배치, 감리원별 담당업무, 감리기간, 감리원의 자격 및 경력

3. 건설공사의 공종별 및 월별 주요 감리업무 추진계획

② 감리원의 배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월수 이상을 현장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되 건축, 기계·전기, 토목감리원 각1인을 포함한 해당분야 감리원을 각분야 공종별 공사기간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상주 감리원 중 20%의 범위 내에서 자료수집, 지원 등 비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은 제1항의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중에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에 배치할 수 없다.

③ 현장 상주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다음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세대수	책임감리원등급
1000세대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1000세대 이상	특급감리원 이상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원 배치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배치계획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상주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3일이상 계속하여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동 기준중 별표(감리원등급별 임금 및 환산비)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

- ① 이 기준은 1997. 8.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